

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40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8년 4월 10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## I. 수정이유

-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그 외의 교육청 행정기구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행태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휴가 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함.

## II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기관에 따라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4일 이내로 그 외의 행정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연 2일 이내로 학습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14조의2제9항)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4조의2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의2(특별휴가) ⑨ 「평생교육법」 제8조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학습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: 연 4일 이내
2. 각급 학교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: 연 2일 이내

##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4조의2(특별휴가) ① ~ ⑧ (생략)</p> <p>⑨ <u>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「유아교육법」 제12조제3항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4조제3항에 따른 휴업일을 활용하여 연간 4일 이내에서 자기계발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본청·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간의 업무연락체계 유지, 학교 시설의 보안유지·관리 및 학생교육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인원을 고려하여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4조의2(특별휴가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<u>공무원은 「평생교육법」 제8조에 따라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간 4일 이내의 자기계발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u></p>	<p>제14조의2(특별휴가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<u>「평생교육법」 제8조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학습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: 연 4일 이내</u></li> <li>2. <u>각급 학교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: 연 2일 이내</u></li> </ol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의2(특별휴가) ⑨ 「평생교육법」 제8조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학습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: 연 4일 이내
2. 각급 학교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: 연 2일 이내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.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정안
<p>제14조의2(특별휴가) ① ~ ⑧ (생략)</p> <p>⑨ <u>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「유아교육법」 제12조제3항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4조제3항에 따른 휴업일을 활용하여 연간 4일 이내에서 자기계발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본청·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간의 업무연락체계 유지, 학교시설의 보안유지·관리 및 학생교육 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인원을 고려하여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4조의2(특별휴가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<u>「평생교육법」 제8조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학습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: 연 4일 이내</u></li> <li>2. <u>각급 학교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: 연 2일 이내</u></li> </ol>

[붙임1]

각 시·도 교육청 학습휴가 현황

구분	대상	적용시기	일수	단서 규정
강원	각급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	재량휴업일, 개교기념일 등 휴업일	연간 5일의 범위	×
경기			연간 4일 이내	×
경상남도			연간 4일 이내	×
경상북도			연간 3일 이내	다만, 학교 시설물 관리, 민원처리 등 업무상 공백 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
광주			연 4일 이내	×
대구			연간 3일 이내	다만, 학교 시설물 관리, 민원처리 등 업무상 공백 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
대전			연간 4일 이내	×
부산			연간 4일 이내	×
서울			연간 4일 이내	이 경우 본청·교육지원청 과 각급 학교 간의 업무 연락체계 유지, 학교시설 의 보안유지·관리 및 학생 교육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인원을 고려하여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 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
세종			연간 2일 이내	다만, 본청·학교간 업무 연락 체계유지, 학교시설 보안 유지·관리 및 학생교 육활동지원 등 업무상 공 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
울산			연 4일 이내	다만, 민원처리 등 업무공 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.
인천			연 3일 이내	×
전라남도			연간 3일 이내	×
전라북도			연 5일 이내	×
제주			없 음	
충청남도			연간 3일 이내	×
충청북도			연 3일 이내	×

[붙임2]

서울특별시 및 각 시·도 교육청 특별휴가 현황

구분	대상	교육청																
	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전북	전남	충북	충남	경북	경남	제주
결혼	본인 (*복무규정)	5	5	5	5	5	5	5	5	5	5	5	5	5	5	5	5	5
	자녀 (*복무규정)	1	1	1	1	1	1	1	1	1	1	1	1	1	1	1	1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							1		1						1	1
출산	배우자 (*복무규정)	5	5	5	5	5	5	5	5	5	5	5	5	5	5	5	5	5
입양	본인 (*복무규정)	20	20	20	20	20	20	20	20	20	20	20	20	20	20	20	20	20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	5	5	5	5	5	5	5	5	5	5	5	5	5	5	5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* (증) : 증조부모, 증외조부모 포함	2	3	2	3	2	3	2	3	3	3	2	3	3	3	3	3	2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	3	2	3	2	3	3	3	3	3	2	3	3	3	3	3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 (*복무규정)	1	1	1	1	1	1	1	1	1	1	1	1	1	1	1	1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	1	1		1		1	1	1	1	1		1	1	1	1	1	1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	1		1		1	1	1		1		1	1	1	1	1	1
탈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			1				1		1						1	1
회갑	본인 및 배우자								1									
자녀돌봄	직계비속 (*복무규정)	2	2	2	2	2	2	2	2	2	2	2	2	2	2	2	2	2
부모휴가	직계비속(만 4세 이하)				5					5								
입영동행	직계비속(적용범위 시도별 차이)	1	1	1	1	1	1	1	1	1	1		1	1	1	1	1	
자기계발 휴가	재량휴업일, 개교기념일 등 이용	4	4	3	3	4	4	4	2	4	5	5	3	3	3	3	4	
장기재직	재직기간별 상이하므로 합산일수 기재 * 상세자료 참고	45	50	30	50	50	45	30	30	30	50	30	40	30	30	20	40	40
배우자유산 사산휴가	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								3		3							
모성보호 휴가	임신 중인 여성공무원										5							
포상휴가	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								3		5							
총 합 계		96	102	77	107	98	97	81	89	86	118	78	91	81	81	71	90	88